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28
----------	------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정책실장 강병호)

1. 제안이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반영하여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각각 정비하고자 함.

-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시설별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사회 복지시설 명칭 등을 현행화 함.

2. 주요내용

-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5조)
-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시설별 소관 실·본부·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시설의 소재지 등을 현행화 함(안 별표)
 - (1) 복지시설의 명칭 변경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프로농장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 (2) 실·본부·국 명칭 변경 : 복지본부 → 복지정책실
 - (3) 복지시설별 주관부서 정비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권익담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시립 영보자애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마리공동체
 - 복지정책과 → 지역돌봄복지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4) 시립시설의 주소 현행화 및 정정 : 시립영보자애원 등 20개 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결과: 미첨부(입법예고 생략)

- 법령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입법예고 제외 사유에 해당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반영한 용어 정비와 복지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개편 내용 및 시립시설들의 명칭 및 주소 현행화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용어의 정비를 제안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시설별 소관 실·본부·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가. 용어의 정비

- 2011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전까지 사용되던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상위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저목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를 신설하게 됨.

- 이는, 이전까지 이원화되어 사용되던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 체계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이 주요한 이유였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따르면, ‘부랑인(浮浪人)’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뜻했고, ‘노숙인(露宿人)’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뜻했음.
 - 이에 따라 부랑인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노숙인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정책 통합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부랑인이란 용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통한 조문체계의 정비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

나. 조직개편 사항 반영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주관부서 정비

○ 또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복지시설 별 실·본부·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함

- 집행부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로 복지본부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하며, ①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② 그에 따라 본 조례 [별표] 의 주관국(과) 분류에서 시립여성보호센터, 시립영보자애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마리공동체의 주관부서를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주관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지역돌봄복지과로 개정하고자 함.
- 금번 개정안은 복지정책실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조직 개편 직후에 신속히 조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2018년 10월 17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출하고, 2018년 12월 14일자로 제 284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바 있음. 이러한 조례개정의 통과시기에 비해 집행부의 행정 후속조치

가 늦은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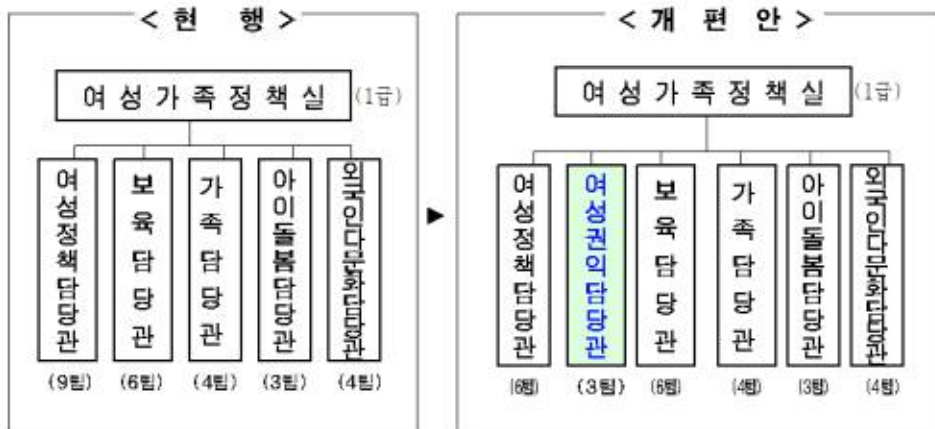
※ 복지정책실 주요 개편 내용 ('19.1.1자)

----- < 복지본부 주요 개편내용('19.1.1자) > -----

- ◆ 본부 명칭 : 복지본부 ⇨ **복지정책실**
- ◆ 부서 재편 : 「희망복지지원과」 ⇨ 「**지역돌봄복지과**」 (명칭변경·보강)
 - 팀 신설(+1팀) : 지역돌봄복지과에 '**지역돌봄서비스팀**' 신설
- ◆ 부서간 업무 이관 : '**복지시설지원팀**'(복지정책과 → 지역돌봄복지과)
'생활보장팀'(지역돌봄복지과(구, 희망복지지원과) → 복지정책과)
- ◆ 본부 정원 : 총 166명 → 총 **173명(+7명)**

※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개편 내용 ('19.1.1자)

○ 젠더폭력 시책 총괄 '**여성권의담당관**' 신설(4급, 1담당관 3팀)



다. 시립시설의 명칭 및 주소 현행화

- 본 조례의 [별표] 의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3프로농장'이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로 명칭을 개정한 것을 반영함.
- 또한, 본 조례의 [별표] 에는 총 8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시립영보자애원 등 20개 시설의 주소를 현행화함.

- 총 20개 기관 가운데 동의동쪽방상담소는 시설 이전에 따른 주소 개정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의 경우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개정하는 등 단순 주소정비에 따른 현행화임.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률을 반영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던 ‘부랑인’이라는 용어는 노숙인과의 개념 중복 문제 등으로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노숙인’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음.
- 또한,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숙인·부랑인으로 나뉘어 시행되던 지원을 일원화시키기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정비로, 이번 개정을 통해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중앙정부 복지사업과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시립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를 현행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8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반영하여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각각 정비하고자 함.
- 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시설별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 명칭 등 현행화 함.

2. 주요내용

- 가.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5조)
- 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시설별 소관 실·본부·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시설의 소재지 등을 현행화 함(안 별표)
- (1) 복지시설의 명칭 변경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프로농장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 (2) 실·본부·국 명칭 변경 : 복지본부 → 복지정책실
- (3) 복지시설별 주관부서 정비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권익담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시립

영보자애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마리공동체

- 복지정책과 → 지역돌봄복지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4) 시립시설의 주소 현행화 및 정정 : 시립영보자애원 등 20개 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결과: 미첨부(입법예고 생략)

- 법령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입법예고 제외 사유에
해당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하고,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제3조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보장애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 치료센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이로 250길 44-142 (상계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7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검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실 (장애인 복지정책과)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검재로61길 81 (망우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행복플러스장애인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하월곡동)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판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하월곡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변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 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변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번길 14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정책실 (장애인 자립지원과)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2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상계6·7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2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상계6·7동)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6·7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상계6·7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2동)	발달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가좌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양평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돈의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50라길 31 (창신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용산구 한강대로 379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57길 35-15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영등포동4가)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정신질환자 보호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정신질환자 보호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22길 4 (대조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이음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 (성내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동작아이존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u>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u> 등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u>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u>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u>부랑인과 노숙인</u>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노숙인시설</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 ----- ----- ----- ----- -----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 <u>노숙인시설</u>----- ----- <u>노숙인</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별표]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동면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립어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남십리 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 치료센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응암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상계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계고분로 32길 35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삼발로 313 (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앙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개 정 안

[별표]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보자애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립어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남십리 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 치료센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응암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상계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계고분로 32길 37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삼발로 313 (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앙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현 행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분부 (인생이모작지원 과)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계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검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분부 (장애인 복지정책과)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검재로61길 81 (망우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행복플러스장애인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판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개 정 안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 원과)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계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검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실 (장애인 복지정책과)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검재로61길 81 (망우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행복플러스장애인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하월곡동)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판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현 행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변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변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시설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프로농장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번길 14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복지분부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람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람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람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람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설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람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람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사람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발달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람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각좌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람꿈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복지분부 (자활지원과)	◦시설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시설양평텃밭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설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사람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사람영등포보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사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사람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사람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수표로22길 22 (돈의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사람창신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50라길 31 (창신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사람남대문쪽방상담소		용산구 한강대로 379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사람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57길 37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사람영등포쪽방상담소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영등포동4가)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설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시설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정신질환자 보호

개 정 안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하월곡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변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변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시설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번길 1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복지정책실 (장애인 자립지원과)	◦시설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2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람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상계6·7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람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람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2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설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상계6·7동)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설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6·7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람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상계6·7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사람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2동)	발달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람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각좌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람꿈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설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시설양평텃밭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설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사람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사람영등포보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사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사람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사람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돈의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사람창신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50라길 31 (창신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사람남대문쪽방상담소		용산구 한강대로 379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사람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57길 35-15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사람영등포쪽방상담소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영등포동4가)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설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시설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정신질환자 보호

현 행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22길 4 (대조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이음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성내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동작아이존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개 정 안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22길 4 (대조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이음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성내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동작아이존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정의에 따라 “부랑자” 용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립사회복지시설의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 내역이 없음

4. 작성자

복지정책과 김 홍(02-2133-7325)